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제 회)	

산 립 문 화 · 휴 양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근거를 마련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1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한 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지정 해제사유 규정(안 제11조의7)

- 차마의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한 후 숲길 실태조사 결과 안전 또는 숲길 훼손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나. 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진입 위반자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안 별표 4 제2호사목)

-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부터 제11조의12까지를 각각 제11조의8부터 제11조의13까지로 하고, 제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지정 해제 등) 법 제2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숲길 이용자의 안전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1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차마의 진입에 따른 숲길의 훼손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숲길관리청에서 차마의 진입을 제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4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2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출입한 경우	법 제38조 제3항제6호	10	15	20
--	---------------	----	----	----

부 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7(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지정 해제 등) 법 제2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제11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숲길 이용자의 안전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u> <u>2. 제11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차마의 진입에 따른 숲길의 훼손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u> <u>3. 기타 숲길관리청에서 차마의 진입을 제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u>
<u>제11조의7 ~ 제11조의12 (생 략)</u>	<u>제11조의8 ~ 제11조의13 (현행 제11조의7부터 제11조의12까지와 같 음)</u>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연 락 처	(042) 481 - 8876